

#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강동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9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0일  
발 의 자 : 강동길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김기덕, 김종무, 문장길,  
송명화, 이승미, 이은주,  
이정인, 이호대, 조상호,  
홍성룡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,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단체의 가출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바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(안 제9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가출청소년”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,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쉼터”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5. “청소년자립지원관”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6. “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”란 서울특별시 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**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
2.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
2.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
3.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,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
4.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
5. 가출청소년의 보호
6.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·복지 지원
7. 가출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
8.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, 주거, 생활, 교육, 취업 등의 지원
9.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7조(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)**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청소년거점쉼터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

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(이하 “거점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
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2.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
3.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
4. 유관기관·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
5. 가출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
6.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**제9조(통합지원체계 활용)**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지원사업), 제7조(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), 제8조(청소년거점쉼터 설치·운영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단, 같은 조례안 제6조(지원사업) 및 제7조(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)는 서울시(평생교육국)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에 근거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함으로써 비용추계 제외(붙임 참고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550,000천원 (연평균 110,000천원)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10,0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안 제8조에 의한 청소년거점쉼터 설치·운영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기 추진중인 유사사업을 기준으로 추계함
- 안 제8조 제2항 제2호, 제3호의 ‘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’과 ‘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’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기 추진 중인 ‘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’의 교육연구사업비를 준용함
- 안 제8조 제2항 제5호 가출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에서 실태 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550,000천원

- 총 비용 =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비 + 조사·연구사업비 및 교육·훈련사업비 +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비 + 실태조사비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제8조제2항제1조 (정보제공 및 홍보사업비)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	제8조제2항제2조, 제3조 (조사연구사업비 및 교육훈련사업비)	8,000	8,000	8,000	8,000	8,000	40,000
	제8조제2항제4조 (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비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제8조제2항제5조 (실태조사비)	200,000	-	-	200,000	-	400,000
	소계(b)	230,000	30,000	30,000	230,000	30,000	550,000
□ 총 비용(b-a)		230,000	30,000	30,000	230,000	30,000	550,000

주1: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비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유사사업 ‘청소년 컴퓨터 운영지원 사업’의 가출청소년 보호·홍보사업비 준용

2: 조사·연구사업비 및 교육·훈련사업비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유사사업 ‘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’의 교육연구사업비(길잡이교사 워크숍 및 성장·교류지원사업 등) 준용

3: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비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유사사업 ‘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’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비 준용

4: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유사사업 ‘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사업’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비 준용

○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비 ≙ 100,000천원

= 20,000천원 × 5년

- 연간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비 = 20,000천원

○ 청소년컴퓨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비 ≙ 40,000천원

= 8,000천원 × 5년

- 연간 조사·연구사업비 및 교육·훈련사업비 = 8,000천원

- 유관기관·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비 ≙ 10,000천원  
= 2,000천원 × 5년
- 연간 네트워크 구축비 = 2,000천원  
= 500천원(네트워크 활동비) + 1,000천원(모니터링비) + 500천원(기타진행비)
- 가출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≙ 400,000천원  
= 200,000천원 × 2회
-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사업평가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백소영
	☎ 02-2180-7954
	e-mail : thdud36@seoul.go.kr